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최봉희 의원 발의】



2020. 5.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13호로 2020년 4월 1일 최봉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다.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안 제6조 ~ 제7조)
- 라. 안전관리요원 배치, 지원요청(안 제8조 ~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0. 2. 20. ~ 2. 24.)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은
  - 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 나.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다. 안 제7조 ~ 제9조에서는 긴급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관기관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최근 지역행사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등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공연 등 행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규모 행사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3 공연법

-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